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6. 22 선고 2021나1715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청구]

재판경과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6. 22 선고 2021나17159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2. 18 선고 2019가단5224439 판결

전 문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동인 (담당변호사 임수정)

피고, 피항소인 B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상준

변론종결 2022. 5. 4.

판결선고 2022. 6. 22.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2. 18. 선고 2019가단5224439 판결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 2015. 10. 5. 접수 제270001호로 마친,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등기국 2015. 10. 5. 접수 제270002호로 마친,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등기국 2015. 10. 5. 접수 제270003호로 마친, 별지 목록 제4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등기국 2015. 10. 5. 접수 제270004호로 마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과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을 다시 살펴봐도 제1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김재영, 판사 홍석현, 판사 최지아

별지